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(문화공보담당관실·환경보호과·수도과소관)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6. 6. 18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6. 6. 18
- 라. 상정일자 : 제46회부천시의회(임시회)제3차총무위원회(96. 6. 19)상정
- 마. 의결일자 : 제46회부천시의회(임시회)제4차총무위원회(96. 6. 20)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정과장 이효선)

가. 제안이유

- 조직개편으로 구 수도과와 구 청소과가 폐지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수도업무 전부와 청소업무 중 일부를 구청장으로부터 회수하고
-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,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(96. 6. 7)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개정

나. 주요골자

- 구 위임사무회수 _____ 18건
 - 수도요금 업무 외 15건
 - 일반폐기물처리업무 외 1건
 -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
 -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등록(변경, 취소)등 관련업무
- ※ 현행 규칙으로 기위임되어 있음(규칙폐지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청소업무와 상수도업무를 구에서 시로 환원하는 겁니까?	○ 그렇습니다.

- 고지서 재발급시 송내동 소재지로 가서 발급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방안은 있습니까?
- 음반에 관한 사무를 구에 위임하는데 업무추진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요?

- 상수도사업소에서 구청에 인원을 1명씩 파견하여 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규칙으로 기위임된 사안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바꾸어 주는 사인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8. 체계적인 심사내용

- 없음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23호
의 결	96. 6. 28
년 월 일	(제46회)

제출년월일 : 1996. 6. 18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조직개편으로 구 수도과와 구 청소과가 폐지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수도업무 전부와 청소업무 중 일부를 구청장으로부터 회수하고
-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,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(96. 6. 7)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개정

□ 주요골자

- 구 위임사무회수 _____18건
 - 수도요금업무 외 15건
 - 일반폐기물처리업무 외 1건
-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
 -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등록(변경·취소)등 관련업무
 - ※ 현행 규칙으로 기위임되어 있음(규칙폐지)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별표 1. 부천시사무의 구 위임사항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위임사무명란 제1호 다음에 제2호를 “별지”와 같이 신설하고, 환경보호과 위임사무명란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, 제4호를 제2호로 하고, 수도과 위임사무명란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지>

1. 부천시사무의 구 위임사항

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적용
문화공보 담당관실	<p>2.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</p> <p>① 등록</p> <p>② 등록사항의 변경신고</p> <p>③ 등록증 교부 및 변경교부</p> <p>④ 폐업</p> <p>⑤ 등록 취소 등</p> <p>⑥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·징수</p> <p>⑦ 청문</p> <p>⑧ 지도·감독 등</p> <p>⑨ 판매·대여 금지조치 등</p>	<p>·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</p> <p>· 동법 제9조</p> <p>· 동법 제10조</p> <p>· 동법 제11조</p> <p>· 동법 제12조</p> <p>· 동법 제13조, 제29조</p> <p>· 동법 제14조</p> <p>· 동법 제21조</p> <p>· 동법 제22조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1] 1.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			[별표1] 1.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		
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규	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규
문화공보 담당관실	1. (생략) <u>(신설)</u>	1. (생략) <u>(신설)</u>	문화공보 담당관실	1. (현행과 같음) 2.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<u>다음의 권한</u> ①등록 ②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③등록증 교부 및 변경교부 ④폐업 ⑤등록 취소 등 ⑥과징금 및 과태료부과·징수 ⑦청문 ⑧지도·감독 등 ⑨판매·대여 금지조치 등	1. (현행과 같음) <u>·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</u> <u>법률 제7조</u> <u>· 동법 제9조</u> <u>· 동법 제10조</u> <u>· 동법 제11조</u> <u>· 동법 제12조</u> <u>· 동법 제13조, 제29조</u> <u>· 동법 제14조</u> <u>· 동법 제21조</u> <u>· 동법 제22조</u>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1] 1.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			[별표1] 1.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무		
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규	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규
환경보호과	1. (생략)	(생략)	환경보호과	1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2. <u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</u> ①과태료의 부과·징수 (단, 법제15조제5항에 한함)	<u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</u> <u>동조례 제11조</u>		(삭제)	(삭제)
환경보호과	3. <u>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</u> ①일반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처리 ②쓰레기 봉투에 관한 다음의 사항 · 봉투의 제작 등 · 봉투의 공급 및 판매 · 일반폐기물의 수집·운반 · 처리수수료의 부과·징수 ·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청소소에 관한 적용	<u>폐기물관리법 제13조, 부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</u> <u>동조례제7조제2항 및 제3항</u> <u>동조례제17조</u> <u>동조례제18조</u> <u>동조례제19조제1항제1호</u> <u>내지제3호, 제2항</u> <u>동조례제20조</u>	(삭제)	(삭제)	
			(삭제)	(삭제)	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1] 1.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			[별표1] 1.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무		
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규	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규
수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수수료의 감면</u> • <u>봉투의 매수</u> • <u>판매소 지정·취소</u> • <u>보고 및 판매대장 등의 확인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동조례 제22조</u> <u>동조례 제23조</u> <u>동조례 제25조, 제27조</u> <u>동조례 제23조</u> 	(삭제)	2. (현행 제4호와 같음)	(현행 제4호와 같음)
	4. (생략)	(생략)			
	1. <u>수도요금의 조정</u>	• <u>수도급수조례 제28조</u>			
	2. <u>수도요금의 징수</u>	• <u>동조례 제25조</u>			
	3. <u>급수장치 손료 징수</u>	• <u>동조례 제32조</u>			
	4. <u>가산금 조정 징수</u>	• <u>동조례 제33조</u>			
	5. <u>납부고지</u>	• <u>동조례 제34조</u>			
	6. <u>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</u>	• <u>동조례 제35조</u>			
	7. <u>요금 등의 감면</u>	• <u>동조례 제37조</u>			
	8. <u>과태료</u>	• <u>동조례 제42조</u>			
	9. <u>이의신청의 접수처리</u>	• <u>동조례 제44조</u>			
	10. <u>사용수량의 인정</u>	• <u>동조례 제29조</u>			
	11. <u>과오납금의 환불</u>	• <u>업무처리규정 제38조</u>			
12. <u>부정 급수단속 및 처리</u>	• <u>동조례 제40조</u>				
13. <u>급수중지 및 폐전</u>	• <u>수도급수조례 제46조</u>				
	제7항				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1] 1.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			[별표1] 1.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무		
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규	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규
	14.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또는 지정	· 수도급수조례 제46조 제3항		(삭제)	(삭제)
	15. 급수공사 승인 및 감독	· 수도급수조례 제6조		(삭제)	(삭제)
	16. 급수장치의 철거	· 수도급수조례 제43조		(삭제)	(삭제)